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9569호, 2009.4.1 공포 2009.7.2 시행)되어 법률 제명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한편 「구미시새주소위원회」를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위원회」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(안 제3조)
- 도로명주소시설 정비 및 재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 (안 제7조)
-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도로명주소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 (안 제9조)
-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(안 제11조)
 - 도로명주소안내판 :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
 - 도로명주소안내도 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
-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실시 (안 제14조)
- 구미시새주소위원회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 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「도로명주소법」
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
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등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(안 제3조)
- 도로명주소시설 정비 및 재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(안 제7조)
-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도로명주소시설 연 1회 이상 점검사항 규정(안 제9조)
-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11조)
- “구미시새주소위원회”를 “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규정 (안 제16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, “구미시새주소위원회”를 “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하는 등 현행 운용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 시행으로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여·사용 관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